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064
결재일자	2015.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민방위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차연경	최만순	권창석	09/08 김종순	
협조	공보담당관 어용경 총무과장 박봉주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2015 민방위 유공자 포상계획



성 동 구
(자치행정과)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2015 민방위 유공자 포상계획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을 기념하여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기관·단체 발굴·포상으로 민방위 분야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서울시 민방위담당관-9595(2015.06.29.), 2015 민방위 유공 포상계획

I 기본 방침

-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자 적극 발굴 포상
- 공적심사 강화 및 일반시민(민방위대원) 위주 포상 실시

II 포상 계획

1 포상개요

- 일 시: 2015. 9. 24.(목) 14:30~15:30
- 장 소: 구청 8층 대회의실
- 포상대상: 23명(통대장 17~20, 공무원 2, 기타(기관표창) 1)
- 포상훈격: 구청장

2 포상대상자 자격요건

민 간 인

- 민방위대장, 대원, 민방위강사, 기타 민간인으로서 민방위 분야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사람

□ 공 무 원

- 민방위분야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 공직관, 사명감이 투철하고 성실·창의적이며 공·사생활에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으로서 민방위업무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자(“15.08.31일까지 공적)

- ✓ 민방위 제도 및 편성·교육·훈련에 공이 있는 자
- ✓ 민방위 시설·장비, 경보, 화생방에 공이 있는 자
- ✓ 각종 재해예방, 수습활동 및 민·관·군·경 합동훈련에 공이 있는 자
- ✓ 기타 민방위시책 및 업무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 등

- 구청장표창계획에 의한 표창추천 제외자 요건 적용

□ 민방위대(각동 지역대 및 직장대)

- 민방위대 업무 활성화에 기여하였거나, 민방위대 발전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수범적인 민방위대
 - 각 동별 전자행정서비스 신청률이 우수한 지역민방위대
 - 교육훈련 성과가 우수한 민방위대 등 모범이 되는 민방위대
 -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상황 및 유지관리 우수 민방위대
 - 각종 재해예방 및 수습활동이 우수한 민방위대
- ※우수지역·직장 민방위대 평가기준(별첨2 참조)

Ⅲ 추천 제한

1 민간인

- 형사처벌을 받은 자

-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 포상 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 또는 1회 200만원 이상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공무원

-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공무원)

-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
-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 ③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된 경우
 - ※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
 - 관련규정: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등
 - 기 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 벌금형의 경우, 포상 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 또는 1회 200만원 이상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비위, 부조리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민방위대 (각동 지역대 및 직장대)

-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수사중이거나 각종 비위, 부조리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IV 공적심사

- 민간인**: 자체 공적심사기준에 따라 엄정 심사
- 공무원**: 상훈담당부서 및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대상자 선정
- 기타(민방위대)**: 선발점검표에 의해 선정

V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790천 원**
 - 우수 지역대 수치(기띠) 제작비: 140천 원
 - 140,000원 × 1개 = 140,000원
 - 창설기념 간담회비: 350천 원
 - 7,000원 × 50명 = 350,000원
 - 우수 유공자 포상: 300천 원
 - 200,000원 × 1부문 = 200,000원
 - 50,000원 × 2명 = 100,000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전시 및 재난 대응능력 향상, 민방위 운영, 민방위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자치행정과, 전시 및 재난 대응능력 향상, 민방위 운영, 민방위대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자치행정과, 전시 및 재난 대응능력 향상, 민방위 운영, 민방위대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301-11)
- 자치행정과, 전시 및 재난 대응능력 향상, 민방위 운영, 민방위대 운영, 포상금, 포상금(303-01)

VI 행정 사항

- 유공자 포상계획 보도 및 촬영 ----- 공보담당관
- 공적심사 협조 및 8층 대회의실 방송시설 지원 협조 ----- 총무과
- 표창대상자 추천('15.9.15.(화)) ----- 각 동주민센터
- 추천시 구비서류
 -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 1부 <서식 1>
 - 공적조서 1부 <서식 2>

<별첨 1>

우수지역 민방위대 선발점검표

▣ 지역민방위대(총17개동)

2015. 09.

연번	구분	총점	전자행정 서비스 접수비율	상반기 교육훈련 참석률	대피시설 장비점검 결과	2014년 교육훈련 결산	비고
	배점		30	25	25	20	
1	왕십리도선동						
2	왕십리제2동						
3	마장동						
4	사근동						
5	행당제1동						
6	행당제2동						
7	응봉동						
8	금호1가동						
9	금호2-3가동						
10	금호4가동						
11	옥수동						
12	성수1가제1동						
13	성수1가제2동						
14	성수2가제1동						
15	성수2가제3동						
16	송정동						
17	용답동						

<서식 1 >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

□ 개인

순위	소속 또는 주소	직급 (직위)	주민등록번호	성명	근무기간 (수공기간)	공적요지	비고
계	00명						
1	00동			홍길동	[10년2월] (10월)	○ <개조식으로 작성> ○ ○ ○	구청장
2							
3							

< 서식 2 >

공 적 조 서 (공무원, 민간인, 기관)

(1)성 명							(한 자)			
(2)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							-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급·계급			
(10)근무기간							(11)공적분야			
(12)공적요지(50자 내외)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7)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구청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동) :
- 직위 (급) :
- 성 명 :

포상추천 훈격 :

동의내용

위 본인은 민방위대 창설 제40주년 기념 2015 민방위 업무 발전 유공자에 대한 구청장표창 대상자에 추천됨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구청장표창업무방침상의추천 제한 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구청장표창업무방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구청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성명

(날인)

※ 추천기관이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에 반드시 서명받아 보관